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1458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이 수립되어(’22.10.26 발표) 초기부터 분양 여부를 확정짓되,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까지 낮춰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나눔형 주택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유형 등으로 신규 도입되고 선택형 주택이 분양전환 임대주택 유형으로 신규 도입됨에 따라, 입주자 자격 중 자산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타법령 개정사항 등을 현행화하고, 농업인에 대한 자산기준 적용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및 타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안 제1조, 제4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개정에 따른 내용을 현행화.

나. 공공주택 유형별 자산 적용기준 명확화(안 제2조)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의 거주 의무기간 내 환매된 주택의 재공급 등의 경우도 별표의 자산기준 적용.

다. 농업인에 대한 자산기준 적용 완화(안 제4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로서 농업인의 사실이 확인되면 보유자 산에서 제외함을 규정.

라. 금융자산가액, 부채 산출기준 명확화(안 제6조, 제8조)

요구불예금 등 금융자산가액 산출시점 등을 명확화하고, 부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증명한 부채와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등을 추가 규정.

마.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자산기준 규정(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kmtr.go.kr>)

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
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